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4 선고 2023가단16617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4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139,750,000원 및 2023. 10. 26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,8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정선희

별지